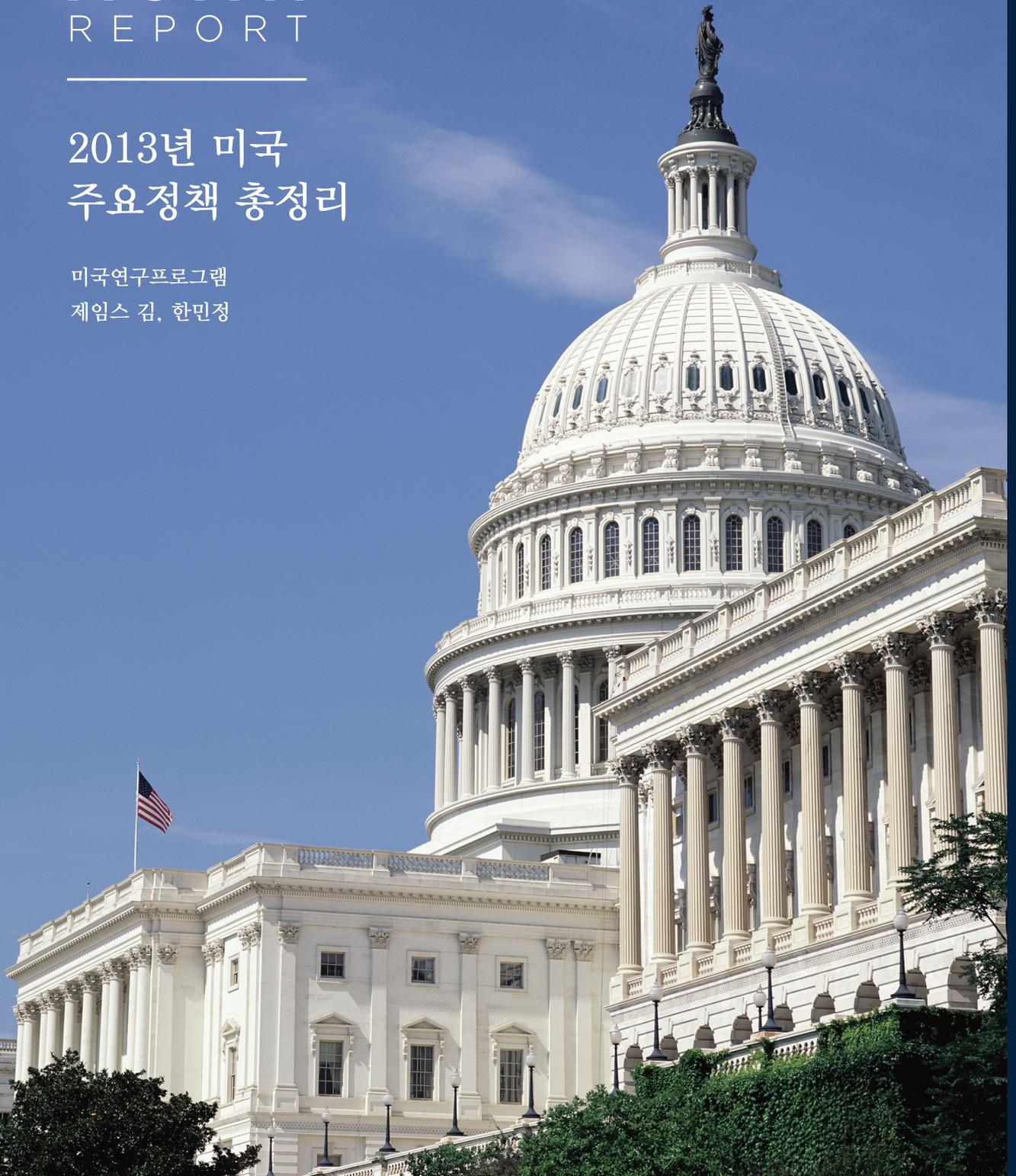


ASAN REPORT

2013년 미국 주요정책 총정리

미국연구프로그램
제임스 김, 한민정



Asan Report

2013년 미국 주요정책 총정리

미국연구프로그램
제임스 김, 한민정

저자

제임스 김

제임스 김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 College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jjkim@asaninst.org)

한 민 정

한민정 연구원은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어와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무역, 경제통합, 연방주의, 조사방법론 등이다. (mjhan@asaninst.org)

인포그래픽스

최 성 한

최성한 전문원은 아산정책연구원 출간물의 인포그래픽스를 담당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동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데이터시각화, 정보디자인 등이다. (han1737@asaninst.org)

감사의 글

2013년 한해동안 미국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이희경(서울대학교), 김보라(이화여자대학교), 김가영(성신여자대학교) 인턴들의 도움으로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작업 및 미 의회 법안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 인턴들과 편집부터 출간까지 도움을 주신 출판실 김호연 전문원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완성까지 귀중한 조언을 주신 함재봉 원장님, 최강 부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문건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I. 재정건전성	06
가. 서울인상	07
나. 채무상한	07
다. 시퀘스터	09
II. 국방 및 안보	11
III. 무역과 에너지	13
가. 에너지	13
나. 무역	14
IV. 이민법 개혁	16
V. 사회복지	18
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18
나. 총기규제 - 신원조회 확대	19
다. 농업법 재승인	22
VI. 민주주의	25
가. 정당정치	25
나. 대법원 헌법재판 결과	26
VII. 2014년 주요 이슈	28
부록 1. 2014년 美 의회 의사일정	29
부록 2. 아산 워싱턴 통신 (2013)	30

그림

<그림 I-1> FY2013-14 재정관련 일정	06
<그림 II-1> 미 육군예산 (1950-2011)	12
<그림 II-2> 미 육군 병력수 (1950-2012)	13
<그림 III-1> TPP와 TTIP 경제규모 비교	14
<그림 III-2> 미국 무역협정 연대표	16
<그림 VII-1> 2014년 주요 이슈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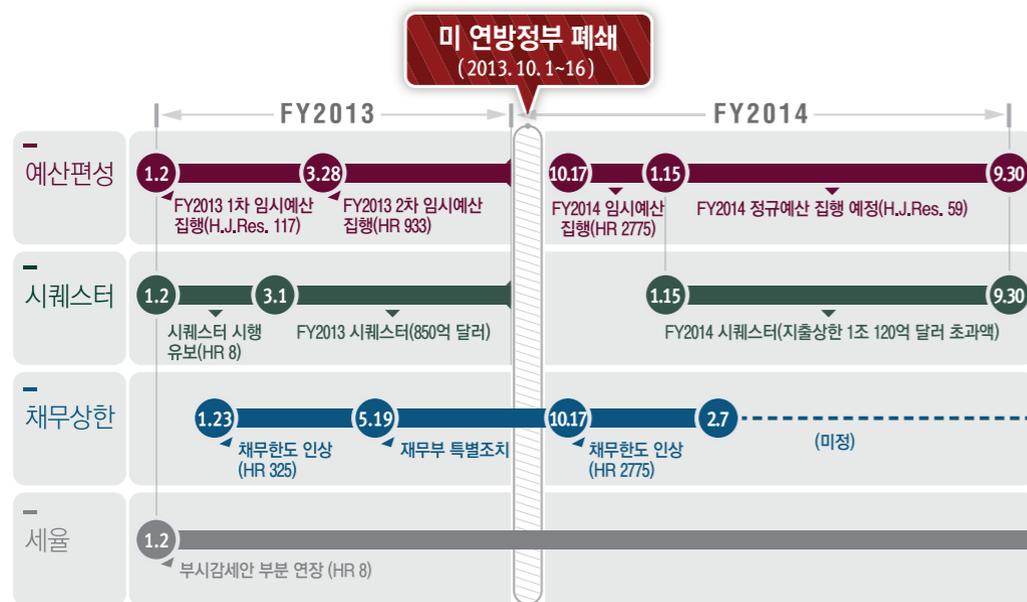
표

<표 I-1> 서울연장 관련 법안	07
<표 I-2> 채무상한 관련 법안	08
<표 I-3> 시퀘스터 관련 법안	09
<표 II-1> 시퀘스터 이후 국방전략 수정안	12
<표 III-1> TTIP 협상의 주요 이슈	15
<표 IV-1> 상원 이민법 개혁안	17
<표 V-1> 건강보험개혁법 수정 법안	19
<표 V-2> 상원 총기규제안	20
<표 V-3> 상하원 농업법 관련 법안	23
<표 VI-1> 대법관 별 위헌심리 결과	27

재정절벽 위기로 시작되었던 2013년은 정부폐쇄, 시퀘스터(sequester, 자동 지출삭감) 시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13대 의회의 상하원간 갈등이 극심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113대 의회는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2월 3일 기준으로, 113대 의회는 총 55개 법안을 입법화했다. 이는 역대 성과가 가장 낮았던 112대 의회보다도 7개 적은 수치이다. 지속되는 갈등으로 정부폐쇄는 물론 재정예산안, 이민법개혁안, 건강보험개혁법, 총기규제안 모두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갈등속에서도 투표권리법, 동성결혼금지법등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고, 필리버스터(filibuster) 핵옵션이 타결됐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 협상도 선언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재정건전성

〈그림 I-1〉 FY2013-14 재정관련 일정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미 연방정부 재정에 관한 문제는 '세율인상, 채무상한, 시퀘스터(sequester)'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공화당은 지출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자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입장차이는 크지만, 시퀘스터 시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가. 세율인상

상하원이 1월 2일 맥코넬-바이든 합의안(HR 8)에 동의하면서, 2012년 종료 예정이었던 '부시감세안'을 일부 소득층에만 연장 적용했다(표 I-1).

〈표 I-1〉 세율연장 관련 법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8	세율연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하 계층에 부시감세안 세율 연장적용 시퀘스터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 	1월 2일 하원 가결 (408-10) 1월 2일 상원 가결 (89-8)

출처: CQ Weekly

나. 채무상한

채무상한 인상에 대해서는 두 번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채무상한 한시증액안(HR 325)을 통해 채무한도를 2013년 5월 18일까지 인상시켰다. 그 결과 채무한도가 16조 3900억 달러에서 16조 7000억 달러로 인상됐다. 그러나 후속조치 없이 HR 325가 만료되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는 바로 2천억 달러 규모의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시행했다. 협상 시간을 확보한 상하원은 FY2014 임시예산안과 채무상한 인상안을 연계시켰다. 민

주당은 ‘조건없는’ 채무상환을 주장했고 공화당은 이에 반대했다. 당시 공화당의 협상 조건은 ‘세법개혁’이었으나, 9월 이후에는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 예산 무효화’로 변경됐다. 결국 의회는 FY2014가 시작된 10월 1일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정부폐쇄(shutdown)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 세법개정, 복지제도 개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결국, 상하원은 정부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17일 직전에 합의에 성공했다. 연방정부의 채무상환을 2014년 2월 7일까지 다시 한 번 인상한 것이다(표 I-2, HR 2775). HR 2775 만료 전에 추가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미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표 I-2〉 채무상환 관련 법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325	채무상환 한시증액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 채무상환을 2013년 5월 18일까지 증액 2013년 4월 15일까지 회계연도 2014년 예산안 타결에 실패하는 경우, 의원 급여 지급 연기 	1월 23일 하원 가결 (285-144) 1월 31일 상원 가결 (64-34)
HR 2775	FY2014 임시 지출예산안/ 채무상환 인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이 재무부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년 2월 7일까지 발생한 채무금액까지 채무상환을 인상 의회가 본 법안의 채무상환 인상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10월 16일 상원 가결 (81-18) 10월 16일 하원 가결 (285-144)

출처: CQ Weekly

다. 시퀘스터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2021년까지 재정적자를 2조 1천억 달러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 중 1조 2천억 달러는 시퀘스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시감세안 종료와 시퀘스터가 동시에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었다.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피하고자 상하원은 시퀘스터 시행을 3월 1일로 연장했다. 이후 추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적으로는 3월 1일에 시퀘스터가 시행됐다. 전 분야에서 재량지출 총 850억 달러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3월 27일에 1차 임시 예산이 종료되면서 후속 예산안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하원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고, 시퀘스터는 2차 임시예산(HR 933)과 함께 시행되었다. 임시예산안은 미 의회가 당해의 지출예산안(appropriation bill)을 법정 기한 안에 타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난해의 예산 수준을 연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 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차 임시예산은 재량지출 상한을 1조 430억달러로 설정했고, 별도로 언급한 5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부서나 기관의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적용 기간은 2013년 9월 30일까지였다.

〈표 I-3〉 시퀘스터 관련 법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8	세율연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하 계층에 부시감세안 세율 연장적용 시퀘스터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 	1월 2일 하원 가결 (408-10) 1월 2일 상원 가결 (89-8)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933	FY2013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상원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에 시퀘스터 이전 재량지출로 1조 430억 달러 책정 국방 기본재량지출에 5,177억 달러 편성 원호부 및 국방관련 건설사업 기본재량지출에 719억 달러 편성 농무부 사업 기본재량지출에 205억 달러 편성 국토안전부 기본재량지출에 396억 달러 편성 상업·법집행·과학관련 사업에 502억 달러 편성 기타 부서·기관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부 사업에 한해 조정가능 	3월 20일 상원 가결 (73-26) 3월 21일 하원 가결 (318-109)
HR 2775	FY2014 임시 지출예산안/채무상한 인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지출예산안을 2014년 1월 15일까지 편성하고, 재량지출로 9,860억 달러 책정 보건·후생부는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의 보조금 지원 자격으로 소득 기준을 설정 대통령이 재무부의 채무 상환 능력이 소진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상한을 2014년 2월 7일까지 채무금액으로 인상 정부 폐쇄 기간 동안 무급휴가 및 근무 중인 연방공무원의 정식급여를 지급 	10월 16일 상원 가결 (81-18) 10월 16일 하원 가결 (285-144)
H. J. Res. 59	FY2014 예산안 합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4, FY2015 재량지출 상한을 인상 항공이용료 인상, 연방 공무원 연금 납부액 인상, 메디케어에 대한 시퀘스터 2년 연장 등의 조치로 지출 증가분을 상쇄 내과외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 시행 결정 취소 상원 법안 비교 	12월 12일 하원 가결 (332-94) 12월 18일 상원 가결 (64-36)

출처: CQ Weekly

시퀘스터 2년 차부터는 지출 감축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예산 편성이 중요했다. 하지만 의회는 FY2014가 시작된 10월 1일 전까지 정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이후 상하원은 임시예산(HR 1775)을 내년 1월 15일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정부 운영을 재개시켰다. 하지만 정규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1월 15일에 다시 정부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상하원 양원협의회는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예산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향후 2년간 집행할 예산안의 기본 사항에 합의했다. 합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양원협의회가 4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본 합의안(H. J. Res. 59)은 하원 수정을 거쳐 상원에서 가결됐다. FY2014, FY2015 재량지출 상한을 각각 9,670억 달러에서 1조 120억 달러로, 9,950억 달러에서 1조 140억 달러로 인상한다. 시퀘스터 규모는 예산통제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630억 달러 축소한다. 본 합의안에 기초하여 상하원은 1월 15일까지 세부 지출예산안 12개를 승인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1월 15일에 다시 한 번 폐쇄된다.

II. 국방 및 안보

예산에 관한 논의는 국방 및 안보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의회예산국(CBO)은 FY2013 시퀘스터 총 850억 달러 중 427억이 국방비 삭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국방부는 내부 보고서(Strategic Management and Management Review, 이하 SCMR)에서 최악의 경우 미국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이미 4,870억 달러를 감축 중인데, 시퀘스터 5,000억과 함께 FY2014 대통령 예산안에서 1,500억 달러 추가 삭감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표 II-1). 육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대신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미군의 주안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는 소규모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미군의 활동 범위를 사이버전쟁, 마약 방지, 인도적 구호 활동, 평화유지, 국내재난구호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표 II-1〉 시퀘스터 이후 국방전략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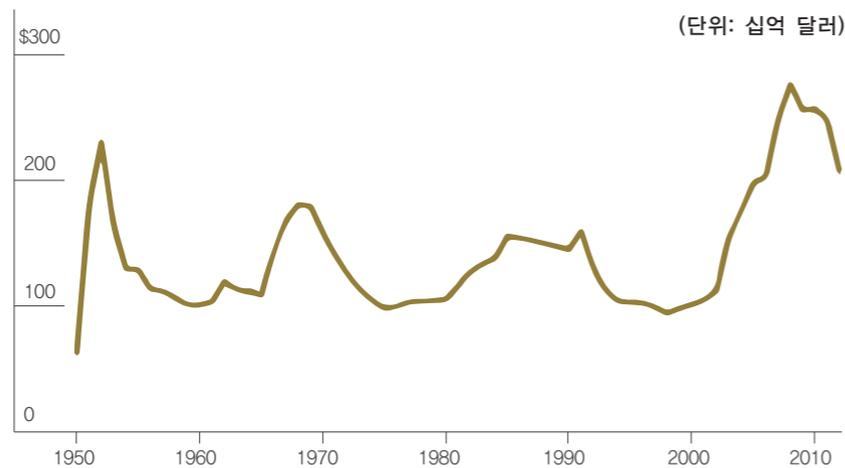
	2012년 신국방전략	시퀘스터 시행 이후 국방전략 (예상)
지출삭감	4,870억 달러 (10년 간)	1조 달러 (10년 간)
전투부대	44개 전투 부대를 36개로 축소	전투부대의 재배치(regional alignment)*
육군병력	FY2017년까지 490,000명으로 축소	FY2017년까지 363,000명으로 축소

출처: CQ Weekly

주: *최소 1개 전투 부대를 지역사령부(geographic combatant command) 및 특수작전부대 (special operations command)와 연계시키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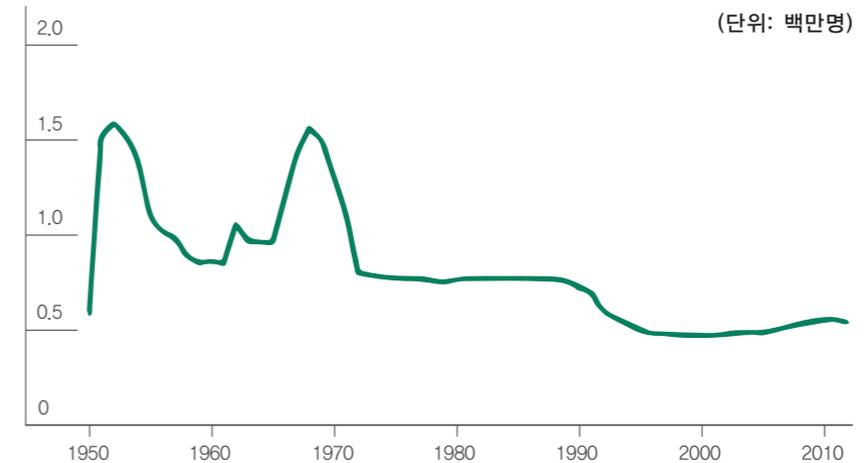
그러나 예산 삭감에 이어 정부폐쇄까지 발생하면서, 오바마(Obama)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SCMR은 미국의 국방 전략을 ‘방어능력(즉, 육/해/공군의 병력 수)’, ‘방위력(무기 시스템과 방어 기술 현대화)’, ‘준비태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방어능력과 방위력에 국방전략의 초점을 맞추었다. 대부분의 국방전략 전문가들이 방위력에 집중하는 전략에 동의했다. 이러한 전략은 올해 초에 발표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 미 육군예산 (1950-2011)



출처: CQ Weekly

〈그림 II-2〉 미 육군 병력수 (1950-2012)



출처: CQ Weekly

12월 중순에 상하원이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며 국방부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하원이 FY2014-15년에 예정된 시퀘스터 규모를 630억 달러 축소하고 FY2014년도 국방비 삭감액을 52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이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 삭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국방정책이 전략보다 예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방예산이나 방위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I. 무역과 에너지

가. 에너지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99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량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의 주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에너지효율강화정책, 탄소오염방지정책,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오히려 연방정부가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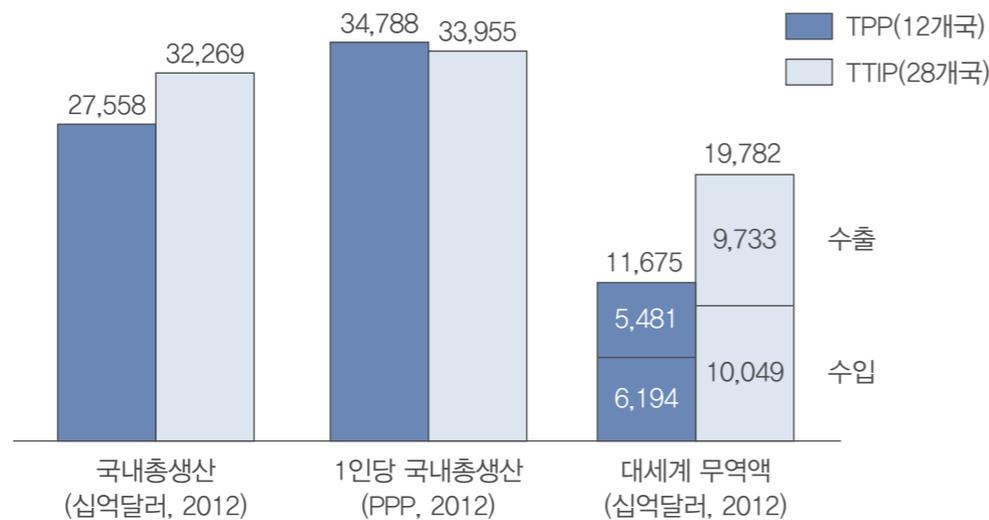
는 비판이다. 국토관리국(BLM)과 환경보호청(EPA)이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수압파쇄법 활용을 규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압파쇄법은 특히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 환경계에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가 제안한 키스톤 파이프라인(앨버타에서 네브래스카에 이르는 1,897km의 원유 수송관) 사안을 두고도 산업계와 환경계가 충돌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설치에 연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무역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연두교서에서 올해 TTIP 협상을 시작하고, TPP는 연내 타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림 III-1〉 TPP와 TTIP 경제규모 비교



출처: a.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b. 대세계 무역액: International Trade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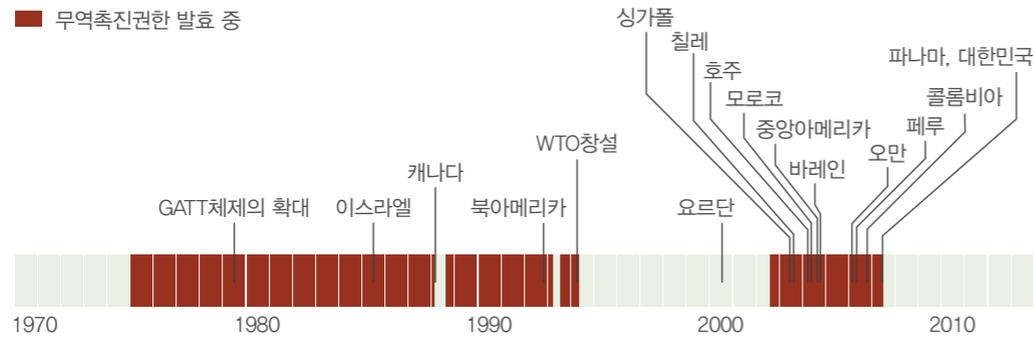
TTIP은 미국과 EU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상이다. 두 지역은 이미 관세수준이 낮은 대규모 경제권으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비관세 장벽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소비자 보호와 공공위생 기준이 높고 규제정책의 시행 목적이 달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표 III-1). 따라서 협의가 수월한 문제는 공식 채널을, 까다로운 문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협정을 통한 규제 단일화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협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TTIP 협상의 주요 이슈

- 양국 간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 절차에 대한 합의점 도출
 예) 유럽연합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금지 조치, 수입품 원산지 표시제도
- 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문제
- 농업계, 자동차 제조업계, 화학 및 의약업계의 반발

TPP는 지난 3월 일본이 참여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했다. 한국도 지난 11월 말에 협상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실질적인 TPP 협상의 중심이 북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TPP의 신속한 타결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 내의 무역촉진 권한(TPA)이다. TPA가 발효되면 의회는 찬반 가결만 가능하고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미국의 무역협정은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TPA 발효 중에 가결되었다(그림 III-2). 하지만 TPA 관련 법안을 작성하는 상원 재무위와 하원 규칙위는 세부내용에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TPP 참여 이후 이러한 갈등이 심해졌다. 일본은 미국의 제4대 무역국이지만 지난해 양자간 무역에서 미국이 7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다,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해 TPP 참여 기준을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2〉 미국 무역협정 연대표



출처: CQ Weekly

IV. 이민법 개혁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2007년 이후로 정체되었던 논의는 올해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상원은 1월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 4명으로 이루어진 ‘8인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의 틀을 잡기 시작했다. 국경감시, 불법체류자 관리, 시험적 법적지위(probationary legal status) 제도, 비자, 영주권, 시민권 부문에 걸친 개혁안이다. 국경감시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현재 불법체류자에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이나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 작성 과정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입법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일자리에 관한 논의는 개혁안에 로비를 통한 특별조항이 마련되면서 불거졌다. 한국, 아일랜드, 폴란드, 캐나다가 자국민에 대한 특별조항 삽입에 성공했다. 한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자국민의 취업비자 쿼터를 늘렸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영향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논의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앞으로 50년간 이민법 개혁안을 시행하는데 약 6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수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법안 시행의 비용과 편익만 계산한 결과였다. 이에 미 의회예산국(CBO)은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1,970억 달러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이민법 개혁안은 상원을 통과했다(표 IV-1).

상원을 통과한 개혁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앞으로 10년간 현재 1,100만 명의 불법이민자 대부분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노동시장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재들의 이민은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은 확대되고 가산점제도(merit-based)가 도입되며, 다양성 비자(DV, Diversity Visa)와 친지 초청 영주권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하원 내에서의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경영·경제계는 긍정적이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Numbers US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영주권 발급 확대에 반대했다. 자국민의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다.

〈표 IV-1〉 상원 이민법 개혁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744	이민법 개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국 국내 불법이민자 대부분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별 제도를 마련하고 국경안보강화 조치를 시행 • 국토안보부는 임시합법신분을 부여받은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국경안보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국경에 1,127km의 철책을 설치하는데 425억 달러 편성. 공항 및 항구에 E-Verify 시스템과 생체인식을 이용한 출입국관리제도 도입. 국경안보관리원 추가 배치. 감시카메라와 소형 무인정찰기 설치 	6월 27일 상원 가결 (총68-32; 민52-0; 공14-32; 무2-0)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744	이민법 개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사자, 미숙련 노동자, 사업가들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 고기술군 근로자 임시 비자 발급 상한을 연 65,000명에서 115,000명으로 확대 • 성과제도를 통해 매년 최대 250,000개 영주권을 발급 • 국토안보부는 매년 E-Verify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불법체류자들의 90% 이상을 추방 조치 •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불법이민자는 사회보장연금 및 정부보조금 수혜 불가 	6월 27일 상원 가결 (총68-32; 민52-0; 공14-32; 무2-0)

출처: CQ Weekly

V. 사회복지

오바마 행정부는 시퀘스터에도 불구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도에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Obamacare) 시행, 총기규제, 농업법 등을 추진했는데, 모두 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이하 건보개혁법)은 2010년 3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2010년 가을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2012년에는 헌법 재판까지 진행되었다.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올해 9월에 건보개혁법 시행 예산을 전면 취소하는 조항을 FY2014 예산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예정대로 지난 10월

1일에 건보개혁법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웹페이지 오류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의료보험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하원이 제시한 수정안(HR 3350)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건보개혁법 시행은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주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 여부와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1〉 건강보험개혁법 수정 법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2668	개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안 중 아래 조항을 2015년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7월 17일 하원 가결 (총251-174; 공229-1; 민22-173)
H. J. Res. 59	FY2014 임시 지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 예산을 전면 취소 	7월 24일 하원 가결 (총230-189; 공228-1; 민2-188)
HR 3350	건보개혁법 하원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1월 1일에 개인의료보험시장에서 제 공되고 있던 보험은 신설된 의료보험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상기보험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에 명시된 최소 보장내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11월 15일 하원 가결 (총261-157; 공222-4; 민39-153)

출처: CQ Weekly

나. 총기규제 - 신원조회 확대

2004년 만료된 총기규제법은 2012년 말 코네티컷(Connecticut)주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으로 인해 113대 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로비단체인 미

국총기협회(NRA) 등이 주요 내용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규제안을 주도해서 작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총기규제안의 입법 가능성이 낮았다. 기본권과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2014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원들의 지지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총기규제 지지는 1994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의 성향보다는 선거구 유권자의 성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상원은 총 9개 발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이 중 7개가 부결됐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광범위한 신원조회안은 부결되었고, 대형탄창과 공격용 총기에 대한 규제안은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진 전략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4월 이후로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표 V-2〉 상원 총기규제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649	신원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기전시회나 인터넷 상에서의 총기구매에도 신원조회를 확대 시행 총기전시회에서의 구매는 신원조회 후 48시간 이내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허용. 법안 발효 5년째부터는 24시간으로 단축 가족구성원·개인 간 매매는 신원조회 면제 주정부가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을 제한 총기구매명단 작성을 국가수준에서는 금지 현역 군인은 출신 주 내에서 총기 구매 가능 국내 대량살상사건 원인규명위원회 신설 	4월 18일* 상원 부결** (총54-46; 민48-5; 공4-41; 무2-0)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649	공화당 규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정부의 국가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장려 연방법원은 국가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주정부에는 연방정부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총기소지가 금지되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 총기구매대행을 연방범죄로 분류 대량총기난사사건의 원인에 대한 연구 시행 학교보안강화·정신건강·범죄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연장 	상원 부결** (총52-48; 민9-44; 공43-2; 무0-2)
	총기 구매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기구매대행도 연방범죄로 분류 경품 및 기념품으로 지급되는 총기는 예외로 인정 	상원 부결** (총58-42; 민53-0; 공3-42; 무2-0)
	총기휴대 허가증 상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정부 사이에는 허가증을 상호인정 	상원 부결** (총57-43; 민13-40; 공44-1; 무0-2)
	공격형 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등급의 반자동 총기와 11발 이상의 탄환이 장착되는 대형 탄창은 법집행관 외에는 생산·수입·판매·소지 금지 	상원 부결** (총40-60; 민38-15; 공1-44; 무1-1)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649	참전용사 총기소지	• 참전용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만 정신박약자 및 총기소지금지자로 지정 가능	상원 부결** (총56-44; 민9-44; 공45-0; 무2-0)
	대형탄창	• 11발 이상의 탄환이 장착되는 대형 탄창은 법 집행관 외에는 생산·수입·판매·소지 금지 • 반자동 총기나 탄창을 반환하는데 지급하는 보상금을 정부보조금에서 충당	상원 부결** (총46-54; 민43-10; 공1-44; 무2-0)
	총기소지자 정보공개	• 지방정부가 범죄수사나 법적 절차 외의 목적으로 총기소지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지역별 보안서비스보조금의 5%를 차감	상원 가결 (총67-30; 민22-28; 공45-0; 무0-2)
	정신건강 프로그램	• 보건·후생부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2018년까지 연장 운영	상원 가결 (총95-2; 민50-0; 공43-2; 무2-0)

출처: CQ Weekly

주: * 상기 법안은 모두 4월 18일 표결

** 본 안건의 가결정족수는 60명 이상 찬성

다. 농업법 재승인

FY2012 만료 예정이었던 2008년 농업법은 1년 연장되는데 그쳐, 올해안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상하원은 각각 S 954와 HR 2642를 가결했으나, 양원협의회에서

합의에 실패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농업지원정책과 영양지원정책(SNAP)에 대한 원내 갈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내용의 HR 1947을 가결하는데 실패했다. 두 정책은 각각 농촌과 도시 유권자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에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HR 2642에 이어 하원은 SNAP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HR 3102)을 별도로 통과시키고 이를 HR 2642에 통합시켰다. 상하원은 SNAP 연장기간, 유제품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농업법과 관련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내년부터 생산되는 작물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게 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표 V-3〉 상하원 농업법 관련 법안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S 954	농업법 상원 개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농업, 식료품, 영양 및 보존 프로그램을 2018년까지 재승인 •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과 경기조정지원금을 ‘불경기지원금’으로 일괄 대체하여, 작물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재승인하고 전기·수도·가스 비용을 10달러 이상 지원받는 가정도 SNAP 수혜대상으로 포함 • 유제품가격지원정책과 유제품시장지원정책(MILC)을 낙농업안정화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유제품 생산량과 이익율을 파악 • 농무부는 수입이 75만 달러 이상인 농민의 작물보험료 보조금을 15% 삭감 	6월 10일 상원 가결 (총66-27; 민46-2; 공18-25; 무2-0)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1947	농업법 하원 개혁안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8년까지 농업, 영양지원, 농촌 개발, 농산물 무역 프로그램에 9,390억 달러 승인 •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과 경기조정지원금을 폐지하고, 두 개의 신규제도 도입 • 주요 낙농업 지원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우유 생산을 총괄하는 신규 제도 도입 •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등급별 수혜 자격을 기타 저소득층 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조정 • 전기·수도·가스 비용을 20 달러 이상 지원 받는 가정도 SNAP 수혜대상으로 포함 • 주정부는 SNAP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지원자에 약물검사 시행, 근로의무 부과, 직무훈련 의무화 조치 가능 	6월 20일 하원 부결 (총195-234; 공171-62; 민24-172)
HR 2642	농업법 하원 개혁안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8까지 농업프로그램 재승인 • 설탕 정책지원(sugar program)을 영구 승인하여 사탕수수와 사탕무 재배 및 가공업자에게 가격 안정 보장 •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과 경기조정지원금을 폐지하고, 두 개의 신규제도 도입 • 주요 낙농업 지원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이윤보장프로그램(margin insurance program)으로 대체 • 현물보조 등 농업보조금 정책 별로 지원 수준을 제정한 1938년 및 1949년 농업법을 폐지 • FY2018까지 현재의 보존 프로그램을 대부분 재승인하되, 23개 프로그램을 13개로 통합 	7월 11일 하원 가결 (총216-208; 공216-12; 민0-196)

법안	발의안	내용	표결일 및 결과
HR 3102	SNAP 재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퇴역군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에게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지원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법안 수정 	9월 19일 하원 가결 (총217-210; 공217-15; 민0-195)
	S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을 FY2016까지 연장 • SNAP 수혜자 근로 의무 조건을 개정된 시범 프로그램 시행 • SNAP 수혜 상점의 경우에는 POS (point-of-sale)기기를 구매하여 보조금 지출 내역을 증빙 	9월 19일 하원 가결 (총217-210; 공217-15; 민0-195)

출처: CQ Weekly

VI. 민주주의

가. 정당정치

2012년 대선 이후로 미 정부는 의회가 양분된 상황에서 국정을 수행해, 정치적인 소모전이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다. 현재 의원들간의 이념에 따른 양극화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2010년도 선거구 재획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오바마 2기 인사 인준안 대부분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상원에서 체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상원은 지난 11월 ‘핵오피션’으로 불리는 필리버스터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의 가결정족수를 60명에서 51명으로 낮추어 필리버스터로 인한 지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법원 인사를 제외한 대통령 지명자의 인준안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민주당은 대다수의 인준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

만 2014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이번 개혁안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적용 대상을 일반 법안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 남용은 극심해진 정당 정치의 한 예일 뿐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워싱턴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보다는 이념에 기반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 대법원 헌법재판 결과

지난 6월 미 대법원은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 제4조, 연방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동성결혼 금지법(Proposition 8)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다. 투표권리법 제4조는 현재 미국 정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됐고, 연방결혼보호법(DOMA)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5조를 침해한다는 점이 위헌 판결의 이유가 됐다. 이로써 동성 결혼이 인정되는 주에서는 동성 부부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며, 미 행정부는 행정 조치를 통해 관련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금지법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전 사실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총 13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됐다.

판결 결과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법관 별 심리 결과이다(표 VI-1). 법관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킨스버그(Ginsburg)나 브라이어(Breyer) 대법관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이고, 알리토(Alito)나 스칼리아(Scalia) 대법관은 보수 진영이다. 케네디(Kennedy) 대법관은 중도파인데, 상기 3개 판결 중 2개 판결이 최종 결과와 일치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케네디 대법관의 결정은 최종 결과와 83% 일치해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기 판결을 제외하고 현재 미 대법원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016년 대선 전에 킨스버그(80세), 스칼리아(77세), 브라이어(75세), 케네디(77세) 대법관들이 은퇴한다면 대법원의 구성은 변하게 된다.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미국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¹

〈표 VI-1〉 대법관 별 위헌심리 결과

대법관	투표권리법 제 4조	연방결혼보호법	동성결혼 금지법
최종 결과	위헌	위헌	위헌
Samuel A. Alito Jr.	위헌	합헌	합헌
Stephen G. Breyer	합헌	위헌	위헌
Ruth Bader Ginsburg	합헌	위헌	위헌
Elena Kagan	합헌	위헌	위헌
Anthony M. Kennedy	위헌	위헌	합헌
John G. Roberts Jr.	위헌	합헌	위헌
Justice Scalia	위헌	합헌	위헌
Sonia Sotomayor	합헌	위헌	합헌
Clarence Thomas	위헌	합헌	합헌

출처: CQ Weekly

1. J. James Kim, "The Significance of the 2012 US Election for South Korea", *Issue Brief* No 33.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November 6, 2012.

VII. 2014년 주요 이슈

2014년 역시 연방정부의 채무문제로 미 의회 회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 채무상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복지법안과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업법과 실업수당이 모두 2013년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구직활동) 130만명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농업법 만료로 유제품,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에는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이 퇴임하고 양적완화도 축소된다. 양적완화 축소 속도나 금리 인상 여부는 2월에 부임하는 자넷 옐런(Janet Yellen) 연준의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 6월 말에는 TPP가 타결될 전망이다. 6월 전에 미 의회가 TPA를 승인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의 양분된 의회구조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부록 1. 2014년 美 의회 의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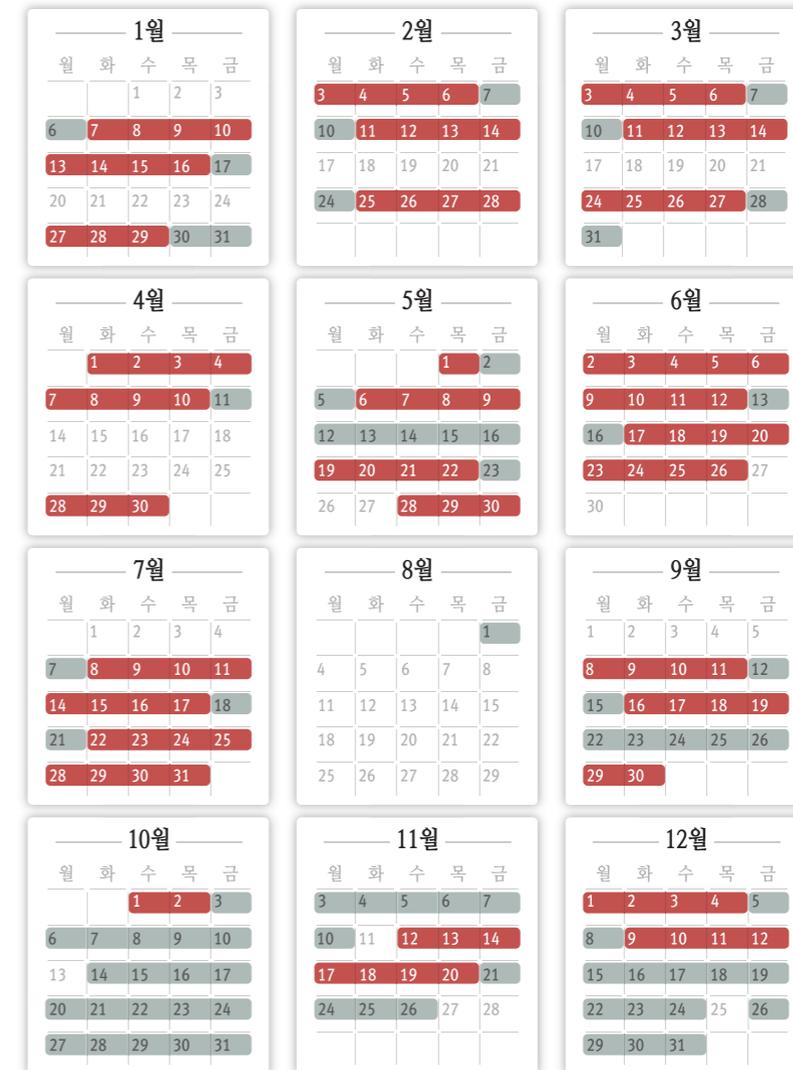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2014년 美 의회 의사일정

■ 상·하원 의사일 ■ 상원 의사일 ■ 하원 의사일 □ 휴회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주: 미 상·하원 의사일정 수집 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재구성

부록 2. 아산 워싱턴 통신 (2013)

아산 워싱턴 통신 (2013)		
1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 • 2013년도 주요 안건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의회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 국방개혁 프로젝트(Project on National Security Reform)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규제 '대통령 행정명령' •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채무 및 예산 •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규칙 개정안 •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2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권리법 '사전 승인' 조항 • 제2기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준 • 이민법 개혁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시퀘스터(sequester) 논의재개 • 대북 식량지원 제재 • 여성폭력방지법(VAWA)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개시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service) • 미·러 핵 군축회담 • 키스톤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3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시퀘스터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따른 치안 공백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 STEM 비자

3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국내법 • 총기규제 • 국가안보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퀘스터와 국방비 감축 • 공화당의 대형 금융사 규제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4년 대통령 예산안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규제안
5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예산과 헌법 개정 • 온라인 판매세 부과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채무상환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법 개혁안 • 대통령 거부권(veto) 행사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촉진권한(TPA)과 일본의 TPP 협상 참여
6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안 • 이민법 개혁안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군사위 예산승인 • 이민법 개혁안 • 2015년도 군사기지 재배치 및 폐쇄(BRAC)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국방 예산안 승인 • 상원 이민법 개혁안(S 744) 표결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이민법 개혁안(S 744) 표결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법원 위헌 심리 • 미 대법원의 보수화 •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도주와 중미 관계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 발급 확대 • 상하원 에너지·용수 세출안과 하원의 에너지 개발 • 관련 법안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방준비제도 양적완화 축소 • 하원 농업법(HR 2642) 가결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예산안 논의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지출예산안 • 워싱턴 D.C. 자체 예산
8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세출위 국방 지출예산안(S 1429) • 미 해외공관 보안강화 • 이란제재안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하락 • 경제전망 악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내 이민법 개혁안 논의 방향 • 미국 형사사법제도 개혁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사태 군사 개입 가능성 고조 • 9월 개회 이후 하원 논의 전략
9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조사 결과 • 시리아 공습 결의안 의회 표결 전망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운영 중단 위기 • 군사개입과 의회 승인

9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예산안 관련 하원 공화당 내 갈등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후보 사퇴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예산안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 한도 협상과 정부 폐쇄 위기
10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방정부 폐쇄 1 주차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폐쇄와 금융 시장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운영 재개와 재정관련 일정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방정부 폐쇄와 정당 정치
11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 상원 정보위 통과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방예산 삭감과 아시아 회귀 전략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관련 미 국내 장벽 • 미국 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버스터 개혁 법안 채택 • 이란 핵협상안에 대한 의회 내 비판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원협의회의 시퀘스터 대체안 논의
12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S의 사회복지단체 정치참여 규제 • 2014년 하원 의사일정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4 예산안 합의 및 하원 통과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폐쇄와 채무불이행 가능성 • 연준 양적완화(QE) 축소

ASAN
REPORT

**2013년 미국
주요정책 총정리**

발행일 2014년 1월 20일

지은이 제임스 김, 한민정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서울시 종로구 경희궁 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030-3 93300 비매품



ISBN 979-11-5570-030-3